

서울대교구 저작물 출판승인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서울대교구(이하 ‘본 교구’)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출판 감독의 의무와 권리)

교구장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작물이나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본 교구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, 또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판단하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작물의 전시, 판매, 배포를 금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(교회법 제824조 1항 참조).

제3조 (저작물의 범위)

① 출판 승인이 필요한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본 교구 내 교회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서적
2. 교구청 각 부서와 본 교구 사도직 단체에서 발행하는 교재 및 회보
3. 일반 출판사 및 인쇄소를 통한 본 교구 소속 사제의 모든 출판물
4. 본 교구 내에서 공적으로 배포될 모든 저작물, 곧 신문, 잡지, 기도문, 기타 인쇄물과 복사물, 전자 출판물, CD, DVD

② 타교구에서 이미 출판승인을 받은 책은 다시 본 교구에서 검열을 받지 않는다.

③ 일반 출판사에서 이미 발행한 책을 다시 교회 출판사에서 출판하고자 할 때는 출판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신자들의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도 교구장의 허가 없이는 출판할 수 없다(교회법 제826조 3항).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교육에 관한 기타 저작물이나 그 번역판은 교구장의 승인이 있어야 출판할 수 있다(교회법 제827조 1항).

제4조 (전시, 판매, 배포)

①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기타 저작물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교회 내에 전시,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다(교회법 제827조 4항 참조).

② 본당 사제와 교회 기관의 책임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출판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교회 내에서 전시, 판매,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출판승인신청)

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출판하여 교회 내에서 전시,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저자 혹은 출판사는 저작물의 내용 전체가 담긴 사본 1부와 소정 양식의 ‘출판승인신청서’(별표 제1호)를 작성하여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본 교구 사무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출판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또한 이미 출판한 저작물의 사후 승인도 신청할 수 있다.

제6조 (검열인)

- ① 교구장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검열인을 학식과 올바른 교리지식을 겸비하여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임명한다(교회법 제830조 1항 참조).
- ② 검열인은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하는 대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기준으로 삼고 저작물을 검열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830조 2항 참조).

제7조 (판정)

- ① 검열인은 자기의 판정을 담은 소정 양식의 ‘검열판정서’(별표 제2호)를 교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830조 3항 참조).
- ② 검열의 긍정적 판정은 그 저작물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아내지 못하였다(Nihil obstat)는 의미를 지닌다.
- ③ 검열인이 저작물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경우, 해당 출판사 및 저자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검열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수정후 재검열 신청은 수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.
- ④ 검열인이 저작물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라 판단하여 출판 불가 판정을 내렸다면 교구장은 해당 출판사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자에게 출판 불허의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.
- ⑤ 교구 사무처장은 수정을 요구 받은 저작물의 해당 출판사 및 저자가 제③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제8조 (출판승인)

- ① 검열인이 긍정적으로 판정하였더라도 교구장은 그 책의 출판을 승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(교회법 제830조 3항 참조).
- ② 교구장의 출판승인은 소정 양식의 ‘출판승인서’(별표 제3호)를 통해서 이루어진다.
- ③ 출판승인은 저작물의 원본에만 적용된다. 따라서 그것의 모든 새로운 판이나 번역본은 별도의 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(교회법 제829조 참조). 다만 승인된 본문의 단순 중쇄에는 새로운 승인이 필요 없다.

제9조 (승인 사실의 표시의무)

- ① 해당 저작물의 출판사는 승인 사실을 저작물의 표지 안쪽 판권정보에 인쇄하고, 출판된 저작물 1부를 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교구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교구 사무처장에게 있다.
- ② 출판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저술의 경우에는, 교구장의 답서를 출판사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교구 문서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.

제10조 (승인의 취소)

- ① 저작물이 가톨릭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비쳐지던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는 판단이 될 때, 이미 내린 승인이라도 철회할 수 있다.
- ② 다만 모든 관련자의 실질적인 절차상 권리가 존중되고, 그 저작물에 대해 필요한 설명이나 수정을 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는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 이미 내린 승인의 철회가 최종 결정되면, 교구장 주교는 그 효력을 위하여 ‘저작물에 이미 내린 교회 승인 철회에 관한 교령’(별표 제4호)을 발표한다.
- ④ 교령이 발표되면, 그 저작물의 모든 후속 인쇄본에서 본래의 허가나 승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발효)

이 규정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 2011년 9월 19일부터 유효하다.

(별표 제1호)

No. _____

출판 승인 신청서

저작물 이름과 형태 :

신청인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저작물 내용(개요) :

이 저작물이 교회의 출판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? (있다면 자세하게 진술)

위의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

(별표 제2호)

No. _____

검열 판정서

저작물 이름과 형태 :

신청인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검열인 :

검열의견 :

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(인)

(별표 제3호)

No. _____

출판 승인서

저작물 이름 :

승인 신청인 :

주소 :

위의 저작물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지 못하였기에 그
출판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천주교 서울대교구장

_____ (인)

No. _____

저작물에 이미 내린
교회 승인 철회에 관한 교령

저작물 이름 :

승인 신청인 :

주소 :

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____년 __월 __일에 출판을 승인한 바 있으나, 그 이후의 숙고를 통해, 이 책이 이미 내려진 승인 사실을 계속 신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, 교회법 규정에 따라 이 저작물에 내려진 승인을 취소합니다.

년 월 일

천주교 서울대교구장

_____ (인)